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85,739,938	41,572,198
일반회계	1,230,867,120	36,926,014
특별회계	154,872,818	4,646,185
공기업특별회계	115,458,905	3,463,76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756,651	1,732,7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702,254	1,731,068
기타특별회계	39,413,913	1,182,4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57,088	163,713
수질개선특별회계	973,184	29,196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745,455	112,3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42,000	1,260
주택사업특별회계	3,110,251	93,308
농공단지특별회계	11,374,927	341,248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91,000	2,73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07,907	78,23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8,000	1,4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54,556	52,637
도시개발특별회계	4,575,000	137,25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5,634,545	169,036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34,33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